

의안번호	2210784
의 퇴 인	전재수의원
회 답 일	2025.7.16.
추 계 번호	25D31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십자성작전 참여군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억 1,600만원, 2030년 12억 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5억 5,800만원(연평균 11억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참전명예수당	835	876	919	958	1,005	4,593	919
의료지원	172	178	183	188	194	915	183
국립묘지 안장	9	9	9	13	10	50	10
합계	1,016	1,063	1,111	1,159	1,209	5,558	1,11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가 될 수 있는 월남전쟁의 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까지에서 1975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함(안 제1항)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참전유공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생계지원금 지급,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생활수준, 부양의무자 및 배우자 존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그런데 해당 서비스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현시점에서는 지원대상 인원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당 서비스의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십자성작전 참여군인의 생존율은 현행 월남전쟁 참전군인의 생존율(2024년 기준 54.7%)과 연평균증감률($\Delta 2.23\%$)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표 2] 월남전쟁 참전군인 보훈보상금 또는 보훈수당 지급인원: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감률
월남전 참전군인	345,994	345,994	345,994	345,994	345,994	
국가유공자 보상금	65,649	67,328	68,524	69,843	72,790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33,222	32,531	31,446	30,538	28,343	
무공영예수당	5,180	4,938	4,593	4,302	3,983	
참전명예수당	102,929	98,644	94,013	89,123	84,007	
소계	206,980	203,441	198,576	193,806	189,123	
생존율	59.8%	58.8%	57.4%	56.0%	54.7%	$\Delta 2.23\%$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보훈병원·위탁병원) 단가는 2024년 기준 단가에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증감률을 적용하고, 수진횟수는 2024년 기준 수진횟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표 3]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 2021~2025년

(단위: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감률
참전명예수당	340	350	390	420	450	7.26%

자료: 국가보훈부

[표 4] 의료지원비 단가 현황: 2020~2024년

(단위: 원, 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감률
보훈병원	단가	96,322	101,081	105,487	106,668	107,734	2.84%
	수진횟수	3.6	5.1	5.4	6.4	6.9	-
위탁병원	단가	27,317	31,112	29,202	33,369	39,895	9.93%
	수진횟수	5.9	5.1	6.0	7.1	8.5	-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국립묘지 안장비용 중 유골함과 봉안명패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¹⁾을 적용하고, 묘지조성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최근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 상승률²⁾을 적용하여 추정함
 - 십자성작전 참여군인 중 개정안과 관계없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소비자물가상승률(2025. 3.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 건설공사비지수(2025.3.31. 발표)

	2016.1.	2018.1.	2020.1.	2022.1.	2024.1.	2025.1.	연평균
건설공사비지수	85.65	93.59	99.69	120.11	129.52	130.47	4.79%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참전명예수당(안 제2조제2호 및 현행법 제6조)

- 참전명예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포함되는 십자성작전 참여군인에 참전명예수당을 곁하여 추계함
- 십자성작전 참여군인(269명)³⁾을 기준으로 월납전(1964~1973년) 참전군인의 2024년 기준 생존율(54.7%)과 연평균 증감률($\Delta 2.23\%$)을 적용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십자성작전 참여군인의 수를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5]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인원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생존인원	144	141	138	134	131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2025년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에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7.26%)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6]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단가: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월 지급액	483	518	555	596	639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십자성작전 참여군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3) 75십자성계획에 따라 “과월특수승지원분대”로 명명된 수송단은 사령관 권○○ 대령을 포함해 총 269명(장교 25명, 부사관 149명, 병사 95명)으로 구성되었음(출처: 이신재, “남베트남 패망시기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06.), 278쪽.

[표 7] 참전명예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신규인원(A, 명)	144	141	138	134	131	—
월 지급액(B, 천원)	483	518	555	596	939	—
개월(C, 월)	12	12	12	12	12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835	876	919	958	1,005	4,5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의료지원(안 제2조제2호 및 현행법 제7조)

- 의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되는 십자성작전 참여군인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각각의 감면진료비 단가와 수진횟수를 곱하여 추계함
- 2024년 결산기준 감면진료비 단가(보훈병원 107,734원, 위탁병원 39,895원)를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보훈병원 2.84%, 위탁병원 9.93%)⁴⁾을 적용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감면진료비 단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8] 보훈병원·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026~2030년

(단위: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훈병원	113,937	117,172	120,498	123,919	127,436
위탁병원	48,213	53,001	58,264	64,051	70,412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십자성작전 참여군인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9억 150만원으로 추계됨

4)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및 연평균증가율: 2020~2024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보훈병원	단가(원)	96,322	101,081	105,487	106,668	107,734	2.84%
	수진횟수(회)	3.6	5.1	5.4	6.4	6.9	—
위탁병원	단가(원)	27,317	31,112	29,202	33,369	39,895	9.93%
	수진횟수(회)	5.9	5.1	6.0	7.1	8.5	—

자료: 국가보훈부

[표 9] 의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훈 병원	신규인원(A, 명)	144	141	138	134	131	—
	수진횟수(B, 회)	6.9	6.9	6.9	6.9	6.9	—
	감면진료 단가(C, 원)	113,937	117,172	120,498	123,919	127,436	—
	소계 (D=A×B×C, 백만원)	113	114	115	115	115	572
위탁 병원	신규인원(E, 명)	144	141	138	134	131	—
	수진횟수(F, 회)	8.5	8.5	8.5	8.5	8.5	—
	감면진료 단가(G, 원)	48,213	53,001	58,264	64,051	70,412	—
	소계 (H=E×F×G, 백만원)	59	64	68	73	78	342
추가재정소요(I=D+H, 백만원)		172	178	183	188	194	9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국립묘지 안장(안 제2조제2호 및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4호나목)

- 국립묘지 안장의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되는 십자성 작전 참여군인 중 사망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비용과 묘지조성비를 합산하여 추계함
- 2024년말 기준 십자성작전 참여군인(생존인원 147명)에 연도별 증감률(△ 2.23%)을 적용하여 추정한 연도별 사망인원을 다음 표와 같음

[표 10] 참전유공자(십자성작전 참여군인) 사망인원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사망인원	3	3	3	4	3

0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안장비용과 묘지조성비 단가는 다음 표와 같음
 - 1인당 국립묘지 안장비용: 140천원
 - 1기당 묘지조성비(연천현충원 기준): 2,596천원(129,823백만원/5만기)

[표 11] 1인당 안장비용: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유골함	봉안명패	합계
단가	90	50	140

주: 유골함은 봉안당 기준이며, 봉안명패는 부부 동시합장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12]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개요: 2025년 기준

- 사업위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20번지 일원
- 부지면적: 957,570㎡(29만평)
- 조성규모: 5만기 봉안시설(봉안당 2만5천기, 봉안담 2만기, 자연장 5천기)
- 사업기간: 2019~2027년
- 총사업비: 129,823백만원(보상비 16,764백만원, 설계비 6,527백만원, 공사비 100,127백만원, 감리비 6,174백만원, 부대비 231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십자성작전 참여군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망인원		3	3	3	4	3	—
단가	안장비용(천원)	143	146	149	152	155	—
	묘지조성비(천원)	2,720	2,851	2,987	3,130	3,280	—
	소계	2,863	2,997	3,136	3,282	3,435	—
추가재정소요		9	9	9	13	10	50

주: 사망인원은 연도별 생존인원에서 직전연도 생존인원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십자성작전 참여군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억 1,600만원, 2030년 12억 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5억 5,800만원(연평균 11억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참전명예수당	835	876	919	958	1,005	4,593	919
의료지원	172	178	183	188	194	915	183
국립묘지 안장	9	9	9	13	10	50	10
합계	1,016	1,063	1,111	1,159	1,209	5,558	1,11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행 참전유공자의 생존률, 연평균 증감률 등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